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회
활 동 결 과 보 고 서

2011. 6.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회

▶ 목 차 ◀

I . 위원회 개요	1
1. 구성목적	1
2. 구성경위	1
3. 위원명단	3
4. 직원명단	4
II . 위원회 주요활동	5
1. 주요 활동 개요	5
2. 일자리특위 지원 발의법안 현황	6
3. 정부 업무현황보고	7
4. 일자리창출을 위한 기업현장시찰 및 중소기업인 간담회	8
5. 청년 일자리 육성을 위한 대토론회	11
6.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회적·범정부적 협력 촉구 결의안	13

I . 위원회 개요

1. 구성목적

-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실업 등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범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강구하고자 국회법 제44조에 따라 국회 내에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회」를 구성

2. 구성경위

- 최근 우리 경제는 국제적 금융위기로 인한 환율 및 유가 등 대외 경제변수의 불확실성 증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전체적으로 경기회복흐름이 지속되고 있지만 그 회복기반이 견고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임. 특히 소비·투자과 고용 등 민간부문의 회복력이 미흡한 실정으로, 가계구매력 저하 및 기업들의 고용여력 저하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청년들의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등 실업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업투자 활성화, 미래 신(新) 성장 동력 확보, 일자리 창출 지원 및 민간소비 회복 등과 관련하여 다양하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따라서 국회는 이와 같은 경제 상황과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범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임.

- 2010년 2월 18일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동 안건이 원안결되어 위원수를 18인으로 하고 활동기한을 2010년 12월 31일로 하는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회」가 구성됨.
- 2010년 12월 8일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에서 「일자리만들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원안결되어 2011년 6월 30일까지 활동기간이 연장됨

3. 위원 명단(18인)

- 2010. 3. 18(목) 제1차 전체회의에서 위원장(민주당 변재일 의원)과 간사(한나라당 정희수 의원, 민주당 김재균 의원)를 선임함.
- 2010. 6. 14(월) 제5차 전체회의에서 변재일 위원장이 사임하고 이종걸 위원장을 선임함.

구 분	교섭단체	위 원 명	비 고
위 원 장	민 주 당	이 종 걸	
위 원	한나라당 (10인)	정 희 수	간사
		강 석 호	
		김 광 립	
		김 성 식	
민 주 당 (5인, 위원장포함)	박 준 선	간사	
	배 은 희		
	성 윤 환		
자유선진당 (2인)	안 효 대		
	윤 석 용		
민주노동당 (1인)	정 태 근		
	김 재 균		
		백 재 현	
		최 영 희	
		홍 영 표	
		김 용 구	
		이 명 수	
		홍 희 덕	

4. 직원 명단(20인)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비 고
기획재정위	수석전문위원	차관보급	국 경 복	
"	전문위원	이 사 관	김 광 목	
"	입법조사관	부이사관	송 병 철	
"	"	서 기 관	조 신 국	
"	"	"	상 지 원	
"	"	"	나 아 정	
"	"	"	신 은 호	
"	"	행정사무관	김 용 우	
"	"	"	김 민 재	
"	"	"	황 영 준	
"	"	"	조 효 정	
"	입법조사관보	행정주사	조 형 규	
"	"	행정주사보	조 명 식	
"	사 무 원	기능7급	전 영 선	
"	"	기능8급	임 현 숙	
"	"	기능8급	조 향 순	
"	전 산 원	기능7급	이 수 경	
지식경제위	입법조사관	부이사관	남 원 희	
환경노동위	"	서 기 관	정 석 배	
의 사 과		행정서기보	이 명 아	

Ⅱ. 위원회 주요활동

1. 주요 활동 개요

- 2010년 2월 18일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이래 일곱 차례의 전체회의와 세차례의 소위회의를 개최
 - 4차례의 전체회의(2차, 3차, 4차, 6차)를 거쳐 20개 기관 업무보고
 - 결의안 작성을 위해 3차례의 소위와 1차례의 전체회의 실시

- 2010년 4월 27일 기업현장시찰 및 중소기업간담회 실시

- 2010년 9월 1일 청년 일자리창출을 위한 국민대토론회 실시

- 2011년 6월 29일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회적·범정부적 협력 촉구 결의안 채택

2. 일자리특위 지원 발의법안 현황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자	비고
1810518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의원 등 15인	환경노동위원회
181051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의원 등 15인	보건복지위원회
181052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의원 등 15인	환경노동위원회
181052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의원 등 15인	보건복지위원회
181078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수의원 등 11인	정무위원회
1810787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수의원 등 13인	지식경제위원회
1810788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수의원 등 11인	정무위원회
18109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효대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181106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영희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1811256	물산법육성법안	정희수의원 등 10인	환경노동위원회
18114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림의원 등 10인	기획재정위원회
181169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수의원 등 10인	환경노동위원회

3. 정부 업무현황보고

차수	일시 및 장소	회 의 내 용	비 고
2	2010. 03. 29(월)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430호)	○ 업무현황보고 :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 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통계 청, 중소기업청 (7개 기관)	
3	2010. 03. 30(화)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430호)	○ 업무현황보고 : 국무총리실,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6개 기관)	
4	2010. 04. 06(화)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430호)	○ 업무현황보고 :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방송통 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6개 기관)	
6	2010. 12. 02(목)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430호)	○ 일자리창출 정부대책 추진현황 보고 가.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 일자리관련 대책보고(기획재정부) 나. 2020 국가고용전략 등 일자리관련 대책보고(고용노동부) 다. 기타 일자리관련 대책보고	

4. 일자리창출을 위한 기업현장시찰 및 중소기업인 간담회

□ 목 적

-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실업 등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범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안 강구
- 개별 기업으로부터 일자리창출에 관한 현황을 보고 받고, 실무적인 애로·건의사항 청취 및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함으로써 향후 일자리창출 정책에 기여

□ 일시 및 장소

- 일 시 : '10.4.27(화) 10:00 ~ 18:00
- 장 소
 - 대기업 : LG 디스플레이(파주)
 - 중소기업대표자 간담회 : (주)지엠피 회의실(파주 문발공단내)
 - 간담회 후 (주)지엠피 생산현장 시찰
- 참석자
 - 국회 일자리만들기 특별위원회위원장 및 위원, 수석전문위원 및 조사관(8인), 보좌관(18인) 등
 - 정부기관 (7개 기관)
 -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 기업체 관계자
 - LG디스플레이 관계자
 - 중소기업대표자 간담회 참석자(15인)
 - 기타
 - 파주시(부시장)
 - 경기도청 직원

□ 세부 일정

시 간	소 요	일 정	비 고
10:00~11:00	60분	○ 국회 출발 → LG디스플레이	버스이동
11:00~12:20	80분	○ 현장방문 및 간담회 - 환영사(LG디스플레이 측) - 위원장 인사말씀 - 회사 브리핑 청취 - 일자리창출 관련사항 논의 - 생산현장 시찰 (7세대 Line 및 전망대 Tour)	LG 디스플레이 (파주)
12:20~13:30	70분	○ 오찬	구내식당
13:30~13:50	20분	○ LG디스플레이 → (주)지엠피	버스이동
13:50~14:00	10분	○ 휴식	(주)지엠피
14:00~16:00	120분	○ 중소기업대표자 간담회 - 위원장 및 참석위원, 기업체 대표 등 소개 (사회 : 수석전문위원) - 위원장 인사말씀 - 일자리창출 방안 관련 질의답변 - 폐회	(주)지엠피 회의실
16:30~17:30	60분	○ (주)지엠피 → 국회	버스이동

□ 간담회 참석업체 건의사항

회사명	건의내용(주요 요지)
(주)지애플 김양평 대표	○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도입 및 확대 ○ 고용창출분야 투자확대를 위한 고용창출 세제감면 혜택
대광중전기(주) 허윤욱 대표	○ 소기업 육성지원 ○ 지자체 수의계약 한도상향
메자닌아이팩(주) 박상덕 대표	○ 사회적기업들의 전반적인 사항을 참석해서 건의할 예정 (사회적기업인증 획득)
(주)명원 이연근 대표	○ 정부지원자금의 규모증대 및 저금리 등으로 직접적으로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도움이 필요
(주)문화 유통박스 이석표 대표	○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분야 및 컨설팅 회수에 대한 제한 완화 ○ 컨설팅 분야의 확대와 기업의 교육기회 확대 절실 ○ 청년고용 지원금 지급조건 완화, 기술인력 고용지원금이 있으면 좋겠음 - 벽지에 위치한 중소기업은 청년 및 기술인력의 고용이 어려움 ○ 서울이 아닌 근거리에 교육장이나 교육강좌가 있으면 좋겠음
(주)알루맥스 전병록 대표	-
(주)에스엠코리아 김상일 대표	○ 소기업이 고급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기회 부여 요망 ○ 기술적인 지원 요망
엘엔케이 인더스트리(주) 이성규 대표	○ 산업용 LPG에 대한 소비세율 인하 ○ 건축시 용적을 및 고도제한 완화
(주)엠플텍 이철훈 대표	○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시설자금, 긴급지원등) ○ 인력고용에 대한 지원책(인재채용에 대한 정보제공등)
(주)영킴 김덕례 대표	○ 창업초기 공장 매입 및 신축, 설비기자재 투자(연구소등), 식약청 인허가 및 벤처기업 등록한 후, 정상공장 가동 및 매출발생까지 최소 1~2년이 소요되는 바, 정부지원 정책자금 신청시 창업 3년후 재무제표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 업종에 따라 재무제표를 심사기준에 차등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주)유진프린팅 김진배 대표	-
(주)지앤티 박윤근 대표	○ 녹색기술 인증 업종 확대 요청 ○ 공장 신축 및 설립시 행정문제 등 조속한 해결 요망
(주)한국절연물산 김순자 대표	-
한림지에스티(주) 임윤철 대표	○ 중소기업 병역특례인원 이용 수월토록 절차 완화 요청
한울생약(주) 한영돈 대표	○ 중소기업 지원자금 증액 ○ 보증기관 보증한도 증액 ○ 수입원부자재 유산스 보증제도 신설(제조업)

5. 청년 일자리 육성을 위한 대토론회

□ 주 제

“청년 일자리 육성을 위한 국민대토론회”

□ 목 적

- 청년일자리를 육성하고, 청년실업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범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강구
- 최근 청년일자리 축소와 실업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젊은 인력에 대한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한 경제 및 국가정책 운용 방향을 점검해 보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향후 관련 법안 및 정책대안 마련에 적극 활용

□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0년 9월 1일(수)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 제3회의장(국회본관 245호실)

□ 사회 및 축사, 발제

- 사 회 : 이종걸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장
- 축 사 :
 - 국회의장, 한나라당 대표, 민주당 대표
 - 고용노동부장관
- 발 제(1인) : 기획재정부 제1차관

□ 토론자(패널 5인)

성명	소 속 및 직 위	비 고
정병철	전경련 상근부회장	대기업경영자대표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중소기업경영자대표
김화수	잡코리아 대표	민간 취업전문가
김대환	인하대 교수	학계
백헌기	한국노총 사무총장(위원장 대리)	노동계 대표

□ 후 원

- 매일경제신문사

6.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범정부적 협력 촉구 결의안

I. 총론

I-1. 노사정 동반자 관계 구축

가. 노사정은 일자리 창출과 유지를 최우선과제로 삼아 고용친화적 경제구조와 일자리를 더하는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상생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일자리 확충을 위한 사회적 역량을 결집하도록 노력한다.

I-2. 고용친화적 경제·산업구조로의 변화

가. 정부는 서비스 산업 등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노력한다.

나. 정부는 고용창출 효과가 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산업구조를 중소·중견기업 친화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I-3. 고용확대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 강구

가. 정부는 기업의 고용확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하여 세제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한다.

I-4. 근로장려세제 개선을 통한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유인 제고

가. 국회와 정부는 물가상승, 최저 생계비 수준 및 최저임금 증가 등을 고려하여 2009년 근로장려금 지급 당시의 수급대상 요건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적정하게 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나.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증가시켜 소득재분배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도입된 근로장려세제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한다.

다. 정부는 2015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포함되는 자영업자의 실제 소득 파악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 자영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시행에 만전을 기한다.

I -5. 고용영향평가 강화

가. 정부는 과학적이고 통일된 기준의 고용영향평가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주요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여 예산편성 등 정책결정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나. 국회는 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에 대해서 사전에 그 영향을 분석하여 입법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노력한다.

I -6. 일자리관련통계 확충 및 내실화

가. 정부는 일자리 창출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고용보조지표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일자리관련통계를 확충하고 내실화한다.

I -7. 취약계층 관련통계 확충

가.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전망 확충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고용의 유형과 격차 등을 나타내는 다양한 지표와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 관련 통계를 확충하고 내실화한다.

II. 노동시장의 공정성 제고

II-1. 기본적인 근로조건 준수 확립

가. 정부는 임금체불 등 근로관계의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사실 관계 확인 등 분쟁해결을 위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하여 서면근로계약이 활성화 되도록 집중적인 지도감독과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한다.

나. 정부는 임금체불의 예방과 근로자의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위하여 악의적인 체불사업자에 대해서는 강력수사 등 제재를 강화하고 체불발생 민원에 대한 민간조정 활성화 등 제도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한다.

다. 정부는 체불이 불가피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체불근로자 보호를 더욱 강화한다.

II-2 인력운영의 탄력성과 취약근로자 보호의 조화

가. 국회·정부·기업은 교대제 개편, 근로시간 단축, 임금체계 개선, 임금피크제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를 실천한다.

나. 국회와 정부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와 사회적 양극화 방지를 위해 근로조건격차와 차별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노력을 강화한다.

다. 국회와 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규제의 형평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II-3. 근로시간 줄이기로 근로생활의 질 향상

가. 국회와 정부는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근로 시간제도를 마련한다.

나. 정부는 중소기업의 장시간근로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II-4.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보호 강화

가. 정부는 사내하도급이 불법과건으로 운영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점검하여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법조치를 취하고, 사내하도급이 불법과건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원청업체에게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지도한다.

나. 정부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근로조건 보호, 직업능력 향상 및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하여 원청업체와 하도급업체가 준수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한다.

Ⅲ. 사회안전망 구축

Ⅲ-1.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가.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저소득 근로자 및 영세사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중소기업 등의 사회보험료 납부에 따른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Ⅲ-2. 실업급여제도 운영의 내실화

가. 노사정은 실업급여가 실업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재취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료율을 조정하고 고용보험기금운용의 안전성과 수익성을 제고하는 등 고용보험제정을 확충하도록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나. 정부는 실업급여와 적극적인 구직활동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실직자가 노동시장으로 신속하게 재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Ⅲ-3.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탈수급 촉진

가. 정부는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수급대상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근로유인체계를 강구하는 한편 자활사업의 질을 향상하고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활과 취업지원을 연계하는 종합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Ⅲ-4. 근로빈곤층의 일을 통한 자립지원

가. 정부는 근로빈곤층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제도를 마련하고 고용안전망을 확충한다.

Ⅲ-5. 일자리 안전망 구축

- 가. 정부는 빈틈없는 일자리 안전망의 구축을 위하여 공공(중앙정부·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민간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정보제공·직업훈련·알선 등 취업과 관련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중복 제공되는 고용서비스의 정비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 국가고용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 나. 정부는 기술 및 산업구조의 변동성과 노동시장의 일자리 이동성 증가에 근로자가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를 구축하고 퇴직자 재취업을 위한 교육훈련과정 등을 개설·확대하도록 노력한다.

- 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여성가장 등 취약계층의 고용가능성을 높이고 생계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취업성공패키지 등 훈련과 생계지원이 결합된 종합취업지원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IV. 기업환경개선

IV-1. 성실 납세 및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존경 문화

가. 노사정은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과 국민이 존경받으며 건전한 기업활동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사회적 공감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한다.

IV-2. 대·중소·중견기업 동반자관계 구축

가. 정부는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줄여 경쟁력 있는 대·중소·중견기업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각종 유인방안을 마련하는 등 자율적 동반 성장을 유도하고, 일방적인 거래 계약 파기와 기업 집단 내 부당 내부 거래를 방지하는 등 공정한 경쟁 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나. 정부는 하도급 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원청업자와 하도급업체의 공정한 계약과정에서 하도급 단가가 결정되도록 하고 하도급 대금이 적시에 지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한다.

다. 국회와 정부는 원청업자가 이미 약정한 하도급 대금을 사후에 정당한 이유 없이 감액하지 못하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고 행정적 감독을 강화한다.

IV-3.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가. 정부는 중소기업의 고용애로 및 구직자들의 취업난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한다.

나. 정부는 중소기업이 전문 인력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 채용시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각종 훈련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신규고용을 창출하기 위하여 직업 훈련강화, 고용서비스 개선 등 일자리 불일치 완화 대책을 추진해 나간다.

라. 정부는 중소기업·저소득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주거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등 근로자 복지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국회는 관련 예산과 세제 지원 등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마. 기업은 원소속근로자 뿐만 아니라 수급회사 및 파견근로자 등에 대하여 기업복지 혜택을 확대·공유하도록 노력한다.

바.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구사 능력 향상, 기능 수준 제고 방안 등을 수립·실행하여 국내 생활 조기적응을 돕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한다.

IV-4. 규제완화 및 금융지원 효율화

가. 정부는 창업 및 투자확대에 장애가 되는 모든 경제적 규제를 상시적으로 재검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창업활성화·중소기업진흥을 위하여 산업과 금융 간 연계를 강화하며 효과적인 금융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IV-5.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가. 국회와 정부는 국내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고용을 유발하기 위하여 서비스산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법과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V. 취약계층 고용지원

V-1.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가. 국회와 정부 및 기업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나. 정부는 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특성에 맞는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사업에 취약계층이 우선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시행한다.

V-2. 장애인 고용촉진

가. 정부는 장애인의 근로능력 및 근로의사를 감안하여 장애인 고용성과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고도의 직업평가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여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 및 기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한다.

나. 정부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직무분석 및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V-3. 고령자 고용촉진

가. 정부는 고령자가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고용연장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한다.

나. 정부와 중소기업은 50대 고학력 퇴직자 등 조기퇴직한 전문인력이 구인난을 겪고 있는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기숙시설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다. 정부는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전업형·봉사형·상용형 시간제 등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V-4. 여성인력 고용촉진

가. 정부는 육아기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 등에 대한 재정부담 체계를 정비하는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강화하고, 노사는 관련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노력한다.

나. 정부는 여성의 육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시간연장형 보육 등 보육서비스를 확충하고 보육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

V-5. 다문화가족 구성원 고용촉진

가. 정부는 다문화가족(새터민 등 포함)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하여 결혼이민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해 교육·훈련을 확대하는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VI. 청년일자리 육성 및 취업지원

VI-1. 청년의 창의적 도전 지원

- 가. 정부는 청년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적극 제안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아이디어가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지기 위한 기반을 강화한다.
- 나. 정부는 청년이 창직·창업 진입단계부터 공정하게 경쟁하고 실패의 부담 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재정·금융·세제 지원 등 안전망을 강화하여, 1인 창조기업·벤처기업 및 사회적 기업 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다.
- 다. 정부·기업·교육계는 창직·창업을 위한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사업 준비 단계부터 멘토링(mentoring)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청년의 창의적 도전을 장려하는 창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VI-2. 청년과 중소기업 간 일자리 연계 강화

- 가. 중소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중소기업 근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해 국회·정부·기업·노동계·언론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노력하여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
- 나. 정부·기업·교육계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재학 중 중소기업 직장체험 기회제공 및 학점인정, 취업지원 서비스 등 제도를 확대하여 청년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VI-3.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력 양성 및 공급

- 가. 대학은 자구노력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고용 창출력을 저하시키는 인력수급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인재양성 및 공급 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나간다.

나. 기업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등 인적투자 확대를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고, 현장실습 기회 제공 등 교육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인재양성에 대한 책임을 공유한다.

다. 국회와 정부는 대학의 구조조정과 개혁이 촉진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대학과 기업이 산업계 수요에 맞는 인적자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라. 정부는 신성장동력 산업 등 전략분야 인력수요 충족을 위하여 공공 및 민간훈련인프라를 활용한 신성장동력 분야 인력 양성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VI-4. 청년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

가. 기업은 인력채용 시 신규채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며 국회와 정부는 일자리 창출실적을 근거로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나. 정부는 청년의 글로벌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봉사·해외인턴·해외취업 등에 대한 지원을 내실화·다양화하여 취업으로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등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노력한다.

VI-5. 고졸 이하 학력자의 취업대책 강화

가. 정부는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등 졸업 후 취업을 장려하는 고등학교 과정을 발전시키고 기업의 사내대학 활성화를 지원하여, 고졸 이하 학력자의 취업여건을 개선하고 과도한 대학 진학률을 완화하도록 노력한다.

나. 정부와 기업은 학력에 의한 과도한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격차를 해소해 나가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한다.

VII. 지역일자리 창출

VII-1. 지역 일자리 창출

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고용을 확대하고 지역고용서비스를 향상시키며 소외계층에 대한 지역공동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고용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나. 국회·정부·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정책이 중복되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VII-2. 지역 일자리 공시제 활성화

가.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지역 일자리 공시제」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평가기준을 구체화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한 장려책을 강구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일자리 공시제」의 목표와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지역의 기업·노동계·자치단위 등의 참여를 확대한다.

다. 국회는 「지역 일자리 공시제」의 실시를 위한 예산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VII-3.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활성화

가. 정부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지역주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동 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하여 지역특화산업에 집중지원이 실시되고 성과도 구체적으로 달성되도록 유도한다.

VII-4. 지역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협의체 역할 강화

가. 지역의 노사와 자치단체 및 민간의 고용유관기관은 지역의 고용문제 해소를 위하여 지역고용실태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이에 기반한 일자리 창출, 고용 불일치 해소 등 다양한 지역고용대책을 강구하며, 정부는 이에 따른 대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VII-5. 지방 소재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가. 국회는 세법 개정 시 지방 소재 기업에 대해 세제지원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한다.

VIII. 분야별 고용확대 정책

VIII-1. 공공기관 인력채용 확대

가. 정부는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등 신규 부가가치 창출분야, 공공의료 등 대국민 서비스분야, 연구개발 분야 등 사회적 수요가 증대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나. 공공기관은 과도한 비정규직 채용을 억제하고 직무분석에 기초하여 기존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 추진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VIII-2. 안전·재해 대책 관련 일자리 확충

가. 국회·정부·기업은 산업재해·치안·소방·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예방을 위한 인력 및 예산을 확충하고 이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VIII-3. 보건·보육·복지 분야 서비스 확충

가. 정부는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라 증대하는 보건·요양·간병 등 돌봄 서비스 수요 충족을 위하여 관련 직업교육을 확대·내실화하고, 인력확충 등 관리체계와 제도를 개선하여 충분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노력한다.

나. 정부는 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을 위한 공공보육 서비스를 강화하고, 양질의 민간 보육 기능이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한다.

VIII-4. 문화·예술·분야 일자리 창출

가. 정부는 민간투자 촉진 등을 통해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미래형 일자리를 지속 창출해 나간다.

나. 정부는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하여 체육·예술 체험학습프로그램 활성화, 스포츠 강사 확대, 생활밀착형 문화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국민의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분야의 일자리 수요를 확충해 나간다.

VIII-5. 서비스산업 육성 및 고용확대

가. 국회와 정부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여 서비스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선진적인 제도를 도입하여 새로운 서비스 기업의 창업을 촉진한다.

나. 정부는 서비스의 특성에 맞는 기업 맞춤형 교육과 직업훈련을 확대하기 위하여 직장훈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2년 간격으로 서비스산업 고용창출을 위한 객관적 평가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다. 국회와 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법을 제정하여 총괄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도록 노력한다.

VIII-6. 사회서비스·사회적기업 육성

가. 정부는 사회서비스·사회적기업 활성화를 통하여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재정·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나. 국회·정부·기업 등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